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별지와같이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가‘26.5.9종료될예정임에따라임대중인주택도매도가원활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하기위해,허가구역내임대중인거주용주택용지를매매하는경우한시적으로이용의무에대한유예특례규정을마련하고자하는것임.

3. 주요내용

임대중인거주용주택용지이용의무에관한임시특례(안제14조의2)

토지거래허가구역및조정대상지역내에서다주택자가소유한임대중인주택을무주택세대구성원이’26.5.9일이전에법제11조에따라허가를받은경우에는제14조제2항제1호의규정에도불구하고법제17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란제2호에따른임대차계약또는전세권설정계약의최초종료일부터2년을말하는것으로봄.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을 말한다.

1.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설정계약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2025년 10월 16일에
지정·공고한 조정대상지역: 2026년 11월 10일 이후 2028년 2월 12일
이전에 최초 종료될 것

나. 가목 외의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2026년 9월

10일 이후 2028년 2월 12일 이전에 최초 종료될 것

3.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것

4. 주택소유자가 주택용지 매매거래 계약체결일 당시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용지의 매매 거래를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여 2026년 5월 9일 이전에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목적으로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권설정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을 말한다. 1. 2026년 2월 12일 당시 임대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권설정계약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것

- 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20
25년 10월 16일에 지정·
공고한 조정대상지역: 202
6년 11월 10일 이후 2028
년 2월 12일 이전에 최초
종료될 것
- 나. 가목 외의 「주택법」 제
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 2026년 9월 10일 이
후 2028년 2월 12일 이전
에 최초 종료될 것
3.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
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할 것
4. 주택소유자가 주택용지 매매
거래 계약체결일 당시 2년 이
상 보유했을 것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402